

주주총회소집공고

2014년 3월 6일

회 사 명 : 한국철강(주)
대 표 이 사 : 장세홍, 정철기 (각자대표)
본 점 소 재 지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103번길 12
(전 화) 055-260-0500
(홈페이지) <http://www.kisco.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무이사 (성 명) 문종인
(전 화) 02-705-4532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6기 정기)

아래와 같이 당사 제6기(2013. 1. 1 ~ 2013. 12. 31)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4년 3월 21일(금) 오전 10시30분

2. 장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103번길 12 (신촌동)
한국철강(주) 본사 3층 강당

3. 회의의 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1) 감사보고
- (2) 영업보고

나)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제6기 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1주당 배당금 900원)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감사위원 선임의 건

제5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단, 제1호 의안은 상법 제449조의2 및 정관 제41조에 따른 요건이 충족될 경우
이를 이사회에서 승인하고 주주총회에서 보고할 수 있습니다.)

4. 경영참고사항등 비치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에 의거하여 경영참고사항등을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본
점 및 지점, (주)하나은행 증권대행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오니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제5항에 의거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주주총회에 참석하셔서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김조일 (출석률: 100%)	하성해 (출석률: 100%)	곽철운 (출석률: 100%)
			찬 반 여 부		
1	2013.01.25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현황보고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2	2013.02.07	제5기(2012사업년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3	2013.02.21	제5기(2012사업년도) 정기주주총회개최의 건	찬성	찬성	찬성
4	2013.03.15	제5기 재무제표 승인 확정 의 건	찬성	찬성	찬성
5	2013.03.21	제5기 영업보고서 작성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6	2013.04.29	비유동자산 (영흥철강 부지) 매입의 건	찬성	찬성	찬성
7	2013.07.17	장상돈 대표이사 사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8	2013.08.28	기채 및 은행여신에 관한 건	찬성	찬성	찬성
9	2013.10.18	수입신용장 한도 재약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10	2013.12.31	김만열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사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 여부
감사위원회	김조일 (감사위원장, 사외이사) 하성해 (사외이사) 정찬현 (사내이사)	2013.01.25	제5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가결
		2013.03.14	제5기 감사보고서 제출의 건	가결
		2013.03.15	제5기 재무제표 이사회 승인 확정 동의의 건	가결
		2013.04.19	제6기 1분기 재무제표 실사	가결
		2013.07.19	제6기 반기 재무제표 실사	가결
		2013.10.18	제6기 3분기 재무제표 실사	가결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3	70억원	3,600만원	1,200만원	

상기 주총승인금액은 사외이사 포함 이사전원에 대한 한도승인액임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2. 당해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당해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산업의 특성

철 강	철강산업은 자동차, 건설, 조선 및 방위산업을 비롯한 전산업의 기초소재를 공급하는 국가 기간산업으로 국가경제발전의 중추적,전략적 장치산업입니다. 그러나 국내 철강산업은 주원료인 철광석,원료탄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전기로의 주원료인 고철은 자급도가 70%에 불과하여 원료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중 태양광 산업은 LCD, 반도체 산업과 유사한 기술 집약적 사업이며 TCO GLASS 원재료를 가공하여 빛을 전기로 변환하는 실리콘 박막 태양전지와 원재료인 cell을 가공하여 결정질 태양전지를 생산하는 업종입니다. 또한 화학 산업과 제조기기, 자동화기기 등 기계장치산업이 뒷받침 되어야 하며, 전력변환과 수송을 수반하므로 전기전자 산업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태양박막전지의 설치는 주택에서는 기존건물의 부합이나 신축건물의 건축자재 일부로서도 사용되어 건축 산업과 유기적 발전이 요구됩니다.

(2) 산업의 성장성

철 강	철강산업의 성장은 자동차, 조선, 건설, 가전, 기계 등 주요 수요 산업의 성장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로 철강산업의 성장은 단기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금융 위기에 대한 노력과 국내 산업의 성장세를 기반으로 철강산업은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수요산업의 고도화에 발맞추어 고급강, 고기능성 금속 소재의 수요는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생산 및 조업기술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위였던 고급강 생산 및 공급체제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에너지	태양광 산업은 그린에너지 구현에 있어 녹색 성장 동력의 견인차 역할을 하며,가속화되는 신재생에너지 수요 중 태양광 산업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지속적인성장이 유망한 업종입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철 강	전기로 제강업은 주로 국내외 건설경기 및 조선 산업의 경기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2분기에 연중 수요가 증가되는 계절적 특성이 있습니다. 보다 장기적인 성장 사이클로 보면 사회간접자본확충 및 주거환경개선이 대거 이뤄지는 성장 초기 및 중기에 호황을 누리다가 점차 안정세에 접어드는 특징을 가집니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경기사이클의 주기적 특성이 불분명해지고 연중 일정한 수요가 형성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건설경기 및 정부의 부동산, 건설 정책의 기조에 의한 영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태양광 산업은 산업전반의 경기변동으로부터 영향보다는 초기 사업 단계로써 정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지원 정책에 영향을 더 크게 받습니다.

(4) 경쟁요소

철 강	① 기술경쟁력 : 보통강의 경우 일반강의 조업기술은 선진국 수준과 대등하나 제품의 기술향상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술은 선진국에 비해 비교적 열위에 있습니다. 특수강의 경우 생산기술은 저급강의 경우 대등한 수준인 반면 고급강의 경우는 제강,정련기술이 열세에 있습니다. ② 가격경쟁력 : 철근과 형강등 조강류는 일본의 고가전략으로 일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이 우위를 점하고 있으나 미국과 EU에 비해서는 고철 가격등으로 열위에 있다. 또한 최근 중국의 철강설비 급증으로 인한 공급과잉이 세계적인 철강가격을 주도하고 있으며 국내 가격경쟁력을 더욱 위협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석탄 등 기존전력 뿐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중에서도 발전단가가 높아, 제조 단가를 낮추고 효율을 높이는 기술력과 15년~20년간 발전에 대한 제품의 품질 보증이 중요합니다.

(5) 자원조달상의 특성

철 강	철강산업의 주원료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선진국의 경우 철강산업의 국제경쟁력 회복을 위하여 스트립캐스팅공법등 혁신 철강기술 개발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어 세계철강시장의 경우는 대규모화,고강도,고인성화 기술등으로 시장구조가 변화되고 있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력 배양이 시급한 실정이나 전반적 기술개발력 확충을 위한 R&D 투자가 미흡하며, 이로인해 특수규격 특수강의 수입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주 원재료인 TCO글라스는 국내에서 조달이 불가능하여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6)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등

철 강	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 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에 따라 철강제조업을 영위하는 모든 기업들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강한 규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사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및 「온실가스 에너지 관리업체의 지정및 관리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2010-109호)에 따른 관리업체로 지정되는등 철강산업에 대한 환경관련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상시 감시 및 최적의 처리시스템을 통해 처리하고 있으며, 폐기물 감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철 강	- 철근 - 최근 세계경제는 유럽재정위기의 확산과 장기화,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등으로 인하여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건설경기의 침체지속에 따라당사의 주력품목인 철근등의 수요부진과 원자재 가격변동 심화, 중국산저가 철강재의 수입급증으로 당사를 비롯한 전기로 제강사들의 대내외적 영업환경이 어려워져 경영상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

이에 당사는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 내부적으로는 원가절감 및 저가 원재료의 확보, 외부적으로는 판매처 다각화 및 신규수요창출, 저가 수입철강재 대응등으로 다각도의 수익창출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 단조 -

최근 조선시장의 불황과 공업용 기계산업등의 경기침체로 인해 당사 생산제품인 구조용 탄소강 및 합금강의 수요는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중국산등 저가품 일반 구조용강의 수입지속으로 국내시장의 잠식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키 위해 국내 메이커들은 대형강 및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고급강 및 특수강, 공구강 위주로 생산시설의 증설 및 전환을 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대외적인 경쟁심화에도 불구하고 품질경쟁력을 통한 안정적인 판매처 확보로 꾸준한 매출을 이뤄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내 경쟁사들의 잇따른 단조설비 증설에 따른 국내생산량 증가로 판매경쟁의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신규 70톤 전기로 및 10,000톤 프레스의 단조설비의 정상가동을 위해 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에너지	2008년 7월 2일 실리콘 박막 태양전지 모듈 양산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매출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업계 경쟁 심화와 제품 가격하락에 따른 수익성 악화에 따라 2012 년 4월 3일 에너지사업부의 생산중단을 결의하여 더이상 제품을 생산하지 않으며 기존에 생산된 제품등을 판매만 하고 있습니다.

(2) 시장점유율

구 분	제 06 기 3분기	제 05 기	제 04 기
한국철강(주)	11.9	10.3	9.8
동국제강(주)	18.6	18.2	18.8
현대제철(주)	31.5	36.0	36.5

※ 위 자료는 철근의 내수시장점유율이며, 당사의 추정치 및 한국철강협회의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3) 시장의 특성

철 강	당사는 본사인 창원공장에서 철근, 단조강(R/Bar 및 S/Bar, 일반단조품)등을 주요 품목으로 생산,판매하고 있으며, 주요 영업지역은 부산, 경남, 경인지역으로 창원영업팀과 서울영업팀, 대구, 대전, 광주영업소 및 전주, 순천, 진주, 목포, 울산, 여수, 대구, 대전, 광주, 영주, 청주, 연기, 안성, 시흥, 서울, 제주, 군산, 동대구, 서귀포 하치장을 통해 판매를 하고 있으며, 철근 수요자의 50% 이상은 개인사업자이며 나머지는 관급 및 건설업체입니다.
에너지	시장 초기 진입 단계로 내수 시장의 비중이 크며, 생산품인 태양광 모듈은 최종적으로 태양광 발전 사업자에게 공급함으로써 발전차액제도 등의 국가 정책 지원에 따라 매출에 영향이 큼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해당사항 없음

(5) 조직도



조직도(2014.01.01)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제1호 의안은 상법 제449조의2 및 정관 제41조에 따른 요건이 충족될 경우 이를 이사회에서 승인하고 주주총회에서 보고할 수 있습니다.)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 상기 'Ⅲ.경영참고사항'의 '1.사업의 개요' 참조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 자본 변동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현금흐름표

<대 차 대 조 표(재 무 상 태 표)>

제6기 2013년 12월 31일 현재

제5기 2012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원)

과목	제 6 기		제 5 기	
자 산				
Ⅰ.유동자산		428,296,694,089		460,604,367,248
1. 현금및현금성자산	36,342,795,753		79,683,117,304	
2. 단기금융상품	93,020,478,773		62,647,276,853	
3. 매출채권	159,523,595,003		187,457,153,055	
4. 기타수취채권	1,219,246,378		1,810,730,596	
5. 기타금융자산	773,550,000		48,120,000	
6. 재고자산	136,242,845,316		128,162,060,860	
7. 기타자산	474,818,886		299,636,800	
8. 당기법인세자산	699,363,980		496,271,780	
Ⅱ.비유동자산		478,890,429,106		476,206,018,046

과목	제 6 기		제 5 기	
1. 장기금융상품	11,268,141,234		8,209,641,234	
2. 기타수취채권	767,697,332		770,697,332	
3. 기타금융자산	23,921,528,100		21,023,646,000	
4. 유형자산	433,661,810,900		443,092,458,126	
5. 투자부동산	6,341,147,551		-	
6. 무형자산	916,906,928		1,215,116,928	
7. 관계기업투자	2,013,197,061		1,894,458,426	
자 산 총 계		907,187,123,195 =====		936,810,385,294 =====
		==		==
부채				
I. 유동부채		197,595,091,124		229,638,716,231
1. 매입채무	160,849,078,531		165,933,645,261	
2. 기타지급채무	27,691,651,143		30,964,339,319	
3. 차입금	3,909,125,739		26,069,961,963	
4. 기타부채	5,145,235,711		6,670,769,688	
II. 비유동부채		22,874,585,727		26,351,538,372
1. 종업원급여부채	1,546,809,820		2,563,118,866	
2. 순확정급여부채	11,922,545,145		16,893,735,052	
3. 이연법인세부채	8,905,230,762		4,627,484,454	
4. 기타지급채무	500,000,000		2,267,200,000	
부 채 총 계		220,469,676,851		255,990,254,603
자 본				
I. 납입자본		598,598,163,966		598,598,163,966
1. 자본금	46,050,000,000		46,050,000,000	
2. 주식발행초과금	552,548,163,966		552,548,163,966	
II. 이익잉여금		77,012,928,080		73,953,223,426
III.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1,267,908,743		8,430,297,744
IV. 기타자본구성요소		(161,554,445)		(161,554,445)
자 본 총 계		686,717,446,344		680,820,130,691
부 채 와 자 본 총 계		907,187,123,195 =====		936,810,385,294 =====
		==		==

<손익계산서>

제6기 :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5기 :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원)

과목	제 6 기	제 5 기
I. 매출액	821,095,616,823	987,039,948,435
II. 매출원가	780,399,023,117	921,998,113,436
III. 매출총이익	40,696,593,706	65,041,834,999
IV. 판매비와관리비	39,353,979,190	50,545,003,908
V. 영업이익	1,342,614,516	14,496,831,091
VI. 기타수익	6,746,867,525	19,311,364,189
VII. 기타비용	908,177,641	17,719,493,345

과 목	제 6 기	제 5 기
VIII.지분법이익	152,207,915	92,737,984
IX.금융수익	6,705,815,615	10,894,688,996
X.금융비용	1,713,788,870	3,089,698,052
X 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2,325,539,060	23,986,430,863
X II .법인세비용	2,927,899,721	5,501,094,045
X III.당기순이익	9,397,639,339 =====	18,485,336,818 =====
X IV.주당손익		
1. 기본주당이익	1,021 원	2,008원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6기 :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5기 :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6 기		제 5 기	
I .당기순이익		9,397,639,339		18,485,336,818
II .기타포괄손익 (법인세차감후 금액)		4,785,819,714		(3,399,578,016)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가.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2,863,717,038		2,095,972,671	
나.지분법자본변동	(26,106,039)		(12,529,225)	
2.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가.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1,948,208,715		(5,483,021,462)	
III.당기총포괄이익		14,183,459,053 =====		15,085,758,802 =====
		==		=

<자본변동표>

제6기 :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5기 :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원)

과 목	납 입 자 본	이익잉여금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기타자본구성요소	합 계
2012. 1. 1	598,598,163,966	69,237,051,470	6,346,854,298	(161,554,445)	674,020,515,289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	18,485,336,818	-	-	18,485,336,818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	2,095,972,671	-	2,095,972,671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5,483,021,462)	-	-	(5,483,021,462)
지분법자본변동	-	-	(12,529,225)	-	(12,529,225)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연차배당	-	(8,286,143,400)	-	-	(8,286,143,400)
2012. 12. 31	598,598,163,966 =====	73,953,223,426 =====	8,430,297,744 =====	(161,554,445) =====	680,820,130,691 =====
	=				=
2013. 1. 1	598,598,163,966	73,953,223,426	8,430,297,744	(161,554,445)	680,820,130,691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	9,397,639,339	-	-	9,397,639,339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	2,863,717,038	-	2,863,717,038

과 목	납 입 자 본	이익잉여금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기타자본구성요소	합 계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1,948,208,715	-	-	1,948,208,715
지분법자본변동	-	-	(26,106,039)	-	(26,106,039)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연차배당	-	(8,286,143,400)	-	-	(8,286,143,400)
2013. 12. 31	598,598,163,966 =====	77,012,928,080 =====	11,267,908,743 =====	(161,554,445) =====	686,717,446,344 =====
	=				=

<현금흐름표>

제6기 :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5기 :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6 기		제 5 기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52,477,428,570		83,212,251,331
1.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47,798,170,067		79,586,113,169	
2. 이자의 수취	5,173,332,141		4,818,474,375	
3. 이자의 지급	(290,981,438)		(992,812,843)	
4. 법인세부담액	(203,092,200)		(199,523,370)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65,585,382,583)		(20,956,127,780)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1,151,300,771,325		721,199,817,829	
가.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1,124,620,081,229		719,928,818,625	
나. 기타금융자산의 감소	48,120,000		13,105,000	
다. 장기금융상품의 감소	25,146,201,336		-	
라. 유형자산의 처분	1,193,368,760		1,257,894,204	
마. 무형자산의 처분	293,000,000		-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1,216,886,153,908)		(742,155,945,609)	
가.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1,154,659,496,276		700,529,427,745	
나. 기타수취채권의 증가	3,950,000		-	
다. 기타금융자산의 증가	-		270,000	
라. 장기금융상품의 증가	38,827,350,668		32,728,000,000	
마. 유형자산의 취득	23,395,356,964		7,107,985,750	
바. 무형자산의 취득	-		235,210,000	
사. 기타지급채무의 감소	-		1,024,357,104	
아. 기타금융부채의 순증감	-		530,695,010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0,232,367,538)		(39,164,739,938)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4,123,737,825		13,586,716,426	
가. 단기차입금의 증가	4,123,737,825		13,586,716,426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34,356,105,363)		(52,751,456,364)	
가. 단기차입금의 상환	26,069,961,963		44,465,312,964	
나. 배당금의 지급	8,286,143,400		8,286,143,400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		-		(4,391,196)
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I + II + III + IV)		(43,340,321,551)		23,086,992,417
VI.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79,683,117,304		56,596,124,887

과목	제 6 기	제 5 기
Ⅶ.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36,342,795,753 =====	79,683,117,304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제6기 :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5기 :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원)

과목	제 6 기	제 5 기
I.미처분 이익잉여금	72,869,856,380	70,638,766,066
1. 전기이월이익잉여금	61,524,008,326	57,636,450,710
2. 보험수리적손익	1,948,208,715	(5,483,021,462)
3. 당기순이익(손실)	9,397,639,339	18,485,336,818
II.이익잉여금 처분액	9,114,757,740	9,114,757,740
1. 이익준비금	828,614,340	828,614,340
2. 배당금 [현금배당주당배당금(률): 보통주: 당기 900원(18%) 전기 900원(18%)]	8,286,143,400	8,286,143,400
III.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63,755,098,640	61,524,008,326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구분	제6기	제5기
주당배당금(원)	900	900
시가배당율(%)	3.55	3.13
배당금 총액(원)	8,286,143,400	8,286,143,400

* 제6기 시가배당율 산정시 시가는 주주명부폐쇄일 2거래일전 과거 1주일간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주가(25,325원)를 사용 하였습니다.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주주총회 1주일 전(3월 13일)까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에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0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 이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제1항 반영
< 신 설 >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신 설 >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신 설 >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제4항 반영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에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상법 제340조의2 및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삭 제 >	
6. 액면총액이 3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의 합작법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삭 제 >	제10조 제1항 제2호로 통합
③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의 결의로 정한다.	③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의 결의로 정한다.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제2항, 동법시행령 제176조의8 제2항·제3항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 반영
⑤ 제2항에 따라 주주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 제165조의9를 반영하여 단서 신설
< 신 설 >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단주관련 내용을 분리하여 별도항으로 규정함
< 신 설 >	⑦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제3항 반영
제10조의3 (주식매수선택권) ① 이 회사는 임·직원(상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상법 제340조의2 및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의 범위 내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제10조의3(주식매수선택권) ① 이 회사는 임·직원(상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상법 제340조의2 및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의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회사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법 제542조의3 반영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 반영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제14조의2(전환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6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제14조의2(전환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0 제1항 (동법 제165조의6 제4항 준용)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신 설 >	1. 사채의 액면총액이 6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제165조의10제1항 (동법제165조의6제4항 준용)
< 신 설 >	2. 사채의 액면총액이 6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0조 제1항 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신 설 >	② 제1항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 신 설 >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 신 설 >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신 설 >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현행과 동일)
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③ (현행과 동일)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현행과 동일)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후 6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현행과 동일)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0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현행과 동일)	
제15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6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제15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0 제1항 (동법 제165조의6 제1항 준용)
< 신 설 >	1. 사채의 액면총액이 6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신 설 >	2. 사채의 액면총액이 6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0조 제1항 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신 설 >	② 제1항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0 제1항 (동법 제165조의6 제4항 준용)
< 신 설 >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 신 설 >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신 설 >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③ (현행과 동일)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현행과 동일)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현행과 동일)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현행과 동일)	
<신 설>	부 칙 이 정관은 제6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14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 · 생년월일 · 추천인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장세홍	1966.10.01	사내이사	임원	이사회
정철기	1955.08.18	사내이사	계열회사 임원	이사회
장상돈	1937.10.01	사내이사	임원	이사회
조완제	1950.11.06	사내이사	계열회사 임원	이사회
정찬현	1946.03.02	사내이사	임원	이사회
문종인	1953.05.20	사내이사	임원	이사회
이병제	1959.07.29	사내이사	임원	이사회
이수하	1961.01.25	사내이사	계열회사 임원	이사회
김조일	1944.11.10	사외이사	없음	이사회
전경두	1935.12.18	사외이사	없음	이사회
정문호	1939.12.28	사외이사	없음	이사회
총 (11)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 · 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 성명	주된직업	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장세홍	한국철강(주) 대표이사 사장	한국특수형강(주) 이사	없음
정철기	한국철강(주) 대표이사 상무이사	한국철강(주) 무역팀장	없음
장상돈	한국철강(주) 회장	동국제강(주) 대표이사 사장	없음
조완제	한국철강(주) 사장	영흥철강(주) 대표이사 사장	없음
정찬현	한국철강(주) 재정본부장 부사장	세화통운(주) 대표이사 사장	없음
문종인	한국철강(주) 영업본부장 전무이사	한국철강(주) 자금팀장	없음
이병제	한국철강(주) 기획조정실장 상무이사	한국철강(주) 전략기획팀장	없음
이수하	한국철강(주) 조달본부장 상무이사	한국철강(주) 구매팀장	없음
김조일	한국철강(주) 사외이사	경남신문사 대표이사	없음
전경두	재단법인 불교방송 이사	동국제강(주) 대표이사 사장	없음
정문호	동국S&C 고문	동국산업(주) 대표이사	없음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 · 생년월일 · 추천인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김조일	1944.11.10	사외이사	없음	이사회
전경두	1935.12.18	사외이사	없음	이사회
정문호	1939.12.28	사외이사	없음	이사회
총 (3)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 · 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김조일	한국철강(주) 사외이사	경남신문사 대표이사	없음
전경두	재단법인 불교방송 이사	동국제강(주) 대표이사 사장	없음
정문호	동국S&C 고문	동국산업(주) 대표이사	없음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 · 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구 분	전 기	당 기
이사의 수(사외이사수)	11(3)	11(3)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70억원	70억원